

제주지방법원 2020. 7. 16 선고 2020가단121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제주특별자치도

변론 종결 2020. 7. 2

판결 선고 2020. 7. 1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가. 1,772,1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3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계산한돈을,나. 2020. 3. 12.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점유 종료일까지 연 460,4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·이 법원의 감정인 B에게 한 임료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

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현재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, 2020. 2. 25. 기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과거 5년분 차임 합계액은 1,772,160원인 사실, 그 이후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연 차임은 350,680원,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연 차임은 63,760원,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의 연 차임은 46,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, (1) 1,772,1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. 3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(2) 2020. 3. 12.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연 460,460원 (350,680원+63,760원+46,020원)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판사 장창국

별지